

수 신 신규등록 및 영업정지 업체

참 조

제 목 건설교육센터 9월 「건설업윤리 및 실무교육」 안내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건설업의 교육)에 따라 2016년 2월 12일 이후 건설업을 최초로 등록한 자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와 관련, 건설교육센터 9월 「건설업윤리 및 실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자는 기한 내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육대상: 건설업 최초 등록 및 영업정지처분 업체 대표자(등기임원)

나. 교육운영

○ 집합교육(150,000원)

- 2026년 대전 집합교육 계획 없음*

*집합교육 신청 인원 저조로 인해 온라인 이수 권장

○ 온라인(이러닝)교육(135,000원)

교육차수	접수마감	교육기간		교육시간
		부터	까지	
제33기	8. 31.	9. 3.	9. 9.	8시간
제34기	9. 7.	9. 10.	9. 16.	

○ 기타안내

구 분	온라인(이러닝) 학습방법 및 교육수료 안내
교육신청	교육차수별 접수마감일까지
학습방법	홈페이지(https://edu.kosca.or.kr) 접속-로그인-사이버연수원 - 나의강의실 학습 ※ 교육차수별 정해진 교육기간 내 수강
교육수료	1. 수료조건: 학습기간 종료일 기준 진도율 100% 인 경우 ※ 교육기간 내 학습진도율 100% 미충족시 미수료처리 되며 교육비 환불 불가 2. 이수통보: 학습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등록관청에 교육 이수 통보 ※ 온라인교육은 학습기간(7일) 기준으로 이수 통보 ※ 교육기간 종료 후 익일부터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수료증 출력 가능
영업정지 처분업체	교육이수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에 따라 영업정지기간 최대 15일 감경 (둘 중 하나) ① 대표이사 이수 시 15일 ② 등기임원 1인당 5일(최대 3인까지)

※ 붙임문서는 **대전시회 홈페이지**(<https://daejeon.kosca.or.kr>)-[공지사항]에서 다운 가능

붙 임 2026년 건설업교육 안내문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회 장 윤 태 연



담당자 주임 박경재 협조자 과장 이재관 실장 윤선중 사무처장 경승현

시 행 전건협 대전 제438호(2026. 8. 27.)

우35233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220번길 54, 3층(둔산동, 전문건설회관)/<https://daejeon.kosca.or.kr/>

전 화 042-472-5191 전 송 042-472-5197 전자우편 paxxrk@kosca.or.kr